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구매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목 차

1. 목적
2. 관련기준
3. 세부업무 기준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1. 목적

이 지침서는 코웨이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기준

2.1 표준구매 절차서

2.2 신규업체 등록 프로세스

2.3 협력업체 선정 및 가격 결정지침

3. 세부업무 기준

3.1 기본원칙

이 지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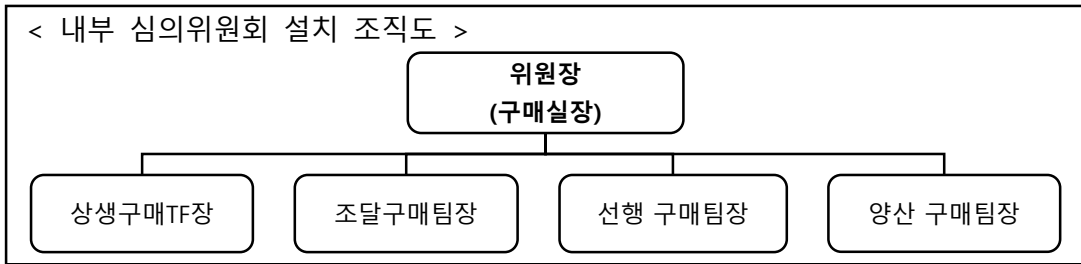
3.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3.2.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 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3.2.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3.2.2.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2.2.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개별계약 금액이 10억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2.2.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한다.

3.2.2.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 한다.

3.2.2.5 내부 심의위원회는 반품 및 발주취소, 감액 내역을 적절성 여부를 심의 한다.

3.2.2.6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 한다.

3.2.2.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3.2.2.8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3.2.3 지침 도입 · 운용여부 판단기준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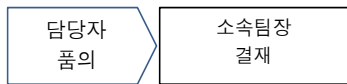
원사업자의 지침 도입·운영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영한 것으로 본다.

- (1)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 (3)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 (4)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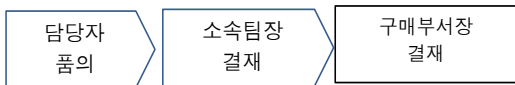
3.2.4 심의 프로세스

3.2.4.1 개별 하도급계약 단가 계약 및 물가변동/원재료 변동 등에 의한 단가 인상, 인하시 하기 FLOW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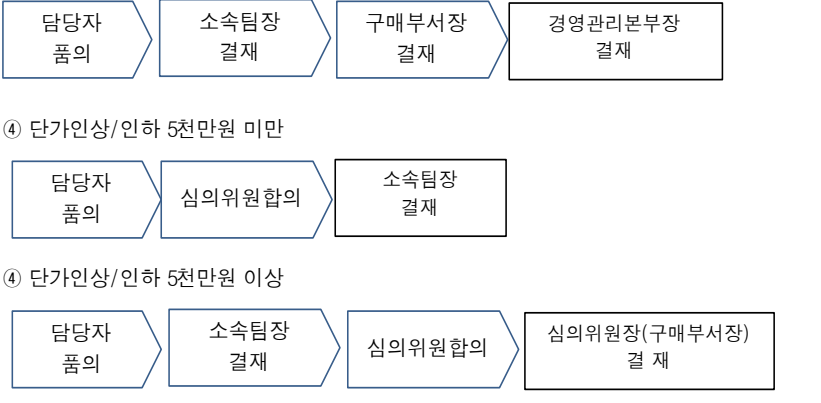
① 신규계약 년 3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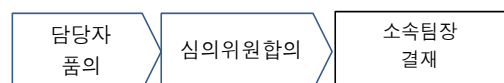
② 신규계약 년 10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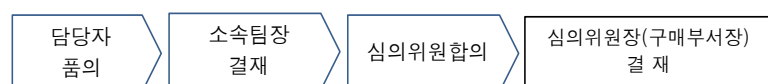
③ 신규계약 년 10억 이상



④ 단가인상/인하 5천만원 미만



④ 단가인상/인하 5천만원 이상



3.2.4.2 협력업체 등록·취소시, 합의대상은 심의위원 및 관련 부문(개발, 품질 외)을 추가로 한다.

3.2.4.3 (1),(2) 항 FLOW에 준하여사전 심의를 진행 하며, 월간 정기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내역을 점검 하고, 예정된 심의건이 있으면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 한다.

3.2.4.4 반품 및 발주취소, 감액내역은 월간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전월의 내역을 심의한다.

3.2.4.5 월 정기 내부 심의위원회 진행 후 관련 기록을 작성 관리대장에 기록 및 보관한다.

3.2.5 CP프로그램 운용

본 문서는 코웨이의 자산으로 지정된 수신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공개, 배포,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상생구매TF	코웨이 구매실	2024.01.17	N/A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준수하기위해 자율적으로 윤리경영조직에서 진행하고, 임직원들에게 법준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과 분쟁을 예방한다.

3.3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운영

CEO 직접보고 체계인 윤리제보사이트 불공정거래 창구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한다.